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중심으로 —

조창준* · 서정화**

■ 목 차 ■

I. 서 론	129	IV.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관련 입법방안	149
II.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일반론	131	1. 의 의	
1. 지방세 특례제도의 특성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 법안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찬반론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 법안	
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4.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특례조항 신설 법안	
III. 2014 개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	136	V. 결론 및 시사점	162
1.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2.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규정의 문제점			
3.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액 등의 적용문제			
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판례분석			

* 주저자 : 현빈세무법인 고문, 세무학박사

** 교신저자 :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 투고일 : 2024. 12. 28. 1차수정일 : 2025. 1. 20. 게재확정일 : 2025. 2. 6.

<국문초록>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그런데 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가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만 명문화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례조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잇달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167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을 내림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은 물론 법적 안정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근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법원의 판결 등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규정과 항목의 선별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의 입법취지와 조세원칙 및 합리적인 항목의 선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도록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지방세법 제103조의22

I. 서 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과세표준이 국세에 규정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와 세율 등에 의해 결정된 소득세액 법인세액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지방소득세 세수 역시 변동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이 없었고,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율(10%)이지만 과세표준인 소득세액·법인세액이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역시 사실상 누진세율구조가 되어 지역 간 세수불균등을 더욱 확대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 기준에 소득할 주민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산정 및 신고방식의 새로운 체계로 개편하였다.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규정만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은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여부에 관해서는 법원(하급심)마다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즉, 「법인세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등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1679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방세법」상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할 것인지와 종전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법인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법원의 판결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일반론

2014. 1. 1.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액공제·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감면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이전에 법인세 총결정 세액에서 부가세율(10%)을 곱하여 적용하던 국세의 부가세방식에서 개편 후에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지방소득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액 및 세액감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소득세 세액을 산출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¹⁾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되²⁾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대대적

1)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2항.

2) 지방세법 제90조.

인 개편을 하면서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1. 지방세 특례제도의 특성

지방세 조세지출제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각기 조세지출의 도입과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도입에 대한 사전적 관리제도는 지방세감면건의서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는데 기존의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사후적 관리제도로는 지방세감면 평가서와 지방세특례 심층평가가 있다.

지방세감면건의서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감면건의서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³⁾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근거법률의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한법」)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지방자치

3)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2022, 389면.

단체의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통합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근거법률의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한법」)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하여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찬반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찬반론은 주로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세수결손은 물론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립성을 저해하여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지역 여건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한다는 정치적 의의가 있지만, 지방세 감면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전국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의 장기화는 경쟁력 향상을 둔화시키고 기업성장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며 개인 간, 기업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은 납세자의 조세의식을 부정적으로 유도하여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론의 주장이다.

반면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긍정적인 측면은 세감면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집단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집단 등은 감면된 지방세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기반에 따라 지역행정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의 부과원칙에도 합당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세 특례가 비록 단점이 있기는 하나 긍정적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신고·납부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 1. 1.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뿐이고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하고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만 두고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이러한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지방소득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⁴⁾ 즉, 「법인세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처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규정이 빠져 있는 이유는 당초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 6. 17.에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13년 9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1~3%로 인하하고,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하여 11%로 하며, 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여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에 법인세 세액감면·공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⁶⁾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
- 4) 당초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한 이유는 법적인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당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고,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 6. 17.에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과 연관이 있다.
-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 167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등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 6) 안전행정부, “중앙 - 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 방안”, 2013. 9. 24.자 보도자료.

Ⅲ. 2014 개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

1.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지방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만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 제2항.

2.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규정의 문제점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개인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부터 제176조의2까지에 규정인데 여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만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연혁을 보면 「지방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만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인세법」과

8)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 개정 이전에 했던 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3.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액 등의 적용문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등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법인세법」에서 연구비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감면이나 공제 등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다르고 법원의 판결도 아래의 판례분석에서 보듯이 달리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판례분석

가.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쟁점 및 의미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승소, 대법원 피고 승소)

원고는 1983. 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10%) 방식이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8. 10. 5. 피고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별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8. 11. 6.에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8. 11. 7.에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⁹⁾

(1) 1심 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에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규정을 별도로 규

9)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87279 판결.

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에 부가하는 형태의 세 목이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법인세액인 이상 구 지방세법에 별도의 세 액 공제·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법 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 공제·감면 조항 역시 세액 공제·감 면 조항에 포함되는 것인 점,

연구비 등에 대하여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를 받지 못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에 의하면 5년 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법인세액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 그와 같은 신뢰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 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¹⁰⁾

(2) 2심 법원의 판단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구 「지방세법」하에서 법인세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세액공 제·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 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부가적이라는 의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 세표준이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방식으로 산정됨으로써 법인세액에 연동된 다는 의미라고 보이고, 혜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단순한 반사적 이익 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법인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작성 검토보고서를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 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¹¹⁾

10)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87279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중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명시한 조세감면 등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해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중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 않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중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도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중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

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쟁점 및 의미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대법원 원고 패소)

원고는 1983. 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에 산출된 법인세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해당 연도 동안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0. 8. 피고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

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¹²⁾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의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거나, 구 지방세법에 따른 혜택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여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 「지방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들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¹³⁾

(2) 2심 법원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이 법인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위 규정이 필연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2)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13)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원고는 위와 같이 5년간 이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정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경과규정은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의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로 인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된다.¹⁴⁾

(3) 대법원의 판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

14)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과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규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중전의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중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닌 점,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중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쟁점 및 의미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원고 패소)

원고는 1983. 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까지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연도 동안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별지 이 사건 거부처분 목록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¹⁵⁾

(1) 1심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의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거나, 구 「지방세법」에 따른 혜택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여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입법정책적인 목적 아래 위와 같은 규정들을 배제하였다고 해석된다.

정리한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15) 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4279 판결.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¹⁶⁾

(2) 2심 법원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의한 특혜로서 이러한 제도는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약 4년에 걸쳐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납세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기대했던 세액공제액이 11분의 1 만큼 줄어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¹⁷⁾

(3) 대법원의 판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

16) 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4279 판결.

17) 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1679 판결.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소 결

이상에서 보았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기로 했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납세자에게 기업경영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차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른 판결(하급심)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관련 입법방안

1. 의 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특례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특례조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항목이다.

첫째, 연구개발 분야는 민간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민간기업의 R&D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유인의 효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그 외부효과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어 기업의 생산성 혁신 및 시설투자 제고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 및 제반

경영 시 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되면서 기업 유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고용창출특례제도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단순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및 법인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인 및 공장을 이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수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이 항목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있다.¹⁸⁾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감면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을 감면하고 있다.¹⁹⁾

한편 2023년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아래의 <표>에서 보면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4조 5,220억 5,8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61.6%로 가장 크고 서울특별시(20.6%), 인천광역시(3.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업의 연구비, 특허 수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이 12억 7천만원이고 전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이 2억 4,900만원인 상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에 비해 약 73%의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에 비해 약 136%의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전체 대기업의 특허 수 평균이 약 2건이고 전체 중소기업의 특허 수 평균이 0.41건인 상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대기업의 특허 수를 약 1.74건, 중소기업의 특허 수를 약 0.36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각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특허 수의 증가로 보아 기술혁신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²⁰⁾

그러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표 1>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서울	930,999	20.6%	전북	28,863	0.6%
인천	170,252	3.8%	전남	16,175	0.4%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2021, 109~111면.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경 기	2,786,022	61.6%	대 구	47,226	1.0%
강 원	22,234	0.5%	경 북	77,406	1.7%
대 전	53,476	1.2%	부 산	61,017	1.3%
충 북	90,376	2.0%	울 산	14,339	0.3%
충 남	102,556	2.3%	경 남	87,559	1.9%
세 종	12,072	0.3%	제 주	3,691	0.1%
광 주	17,795	0.4%	합 계	4,522,058	100.0%

자료 :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 TASIS, 2024, <https://tasis.nts.go.kr>(검색일 : 2025. 1. 16.).

당초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옮겨 규정하였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입법자들이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강화라는 입법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였다고 추정하나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라는 근본 취지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신설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신설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법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u>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 에서 공제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u>개인지방소득세</u> 세액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u>개인지방 </u>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p>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u>개인지방소득세</u>를 공제·감면한다.</p>	<p><u>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를 공제·감면한다.</p>
<p>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소득세</u>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u>개인지방소득세</u>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u>개인지방소득세</u>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p>	<p>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소득세 및 법인세</u>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p>
<p>③ 「<u>소득세법</u>」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u>소득세</u>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u>소득세</u>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u>개인지방소득세</u>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u>소득세</u>에 「<u>소득세법</u>」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u>이자상당가산액</u>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u>개인지방소득세</u>에 가산한다.</p>	<p>③ 「<u>소득세법</u>」, 「<u>법인세법</u>」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u>소득세 및 법인세</u>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u>소득세 및 법인세</u>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u>소득세 또는 법인세</u>에 「<u>소득세법</u>」, 「<u>법인세법</u>」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u>이자상당가산액</u>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에 가산한다.</p>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법안

「지방세법」 제84조의5조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²¹⁾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그 제2호에서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²⁾

한편 2023년도 법인세 고용창출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아래의 <표>에서 보면,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175억 1,400만원이고 지방자치체체별로 그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26.7%로 가장 크고 서울특별시(21.1%), 경상북도(1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

22)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표 3> 법인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법인소재지	법인세액	비중
서울	3,688	21.1 %	전북	260	1.5 %
인천	30	0.2 %	전남	206	1.2 %
경기	4,678	26.7 %	대구	370	2.1 %
강원	135	0.8 %	경북	2,780	15.9 %
대전	70	0.4 %	부산	596	3.4 %
충북	886	5.1 %	울산	636	3.6 %
충남	1,154	6.6 %	경남	1,374	7.8 %
세종	0	0.0 %	제주	4	0.0 %
광주	647	3.7 %	합계	17,514	100.0 %

자료 :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 TASIC, 2024, <https://tasis.nts.go.kr>(검색일 : 2025. 1. 16.).

그리고 고용창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그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고용·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함에 따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유지 및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원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음으로 해서 과도기적 산업구조 전환에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증대 및 고용률 제고는 본질적으로 노동정책이지만 복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되었다.²³⁾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용창출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23)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세종 : 기획재정부, 2017, 160면.

하는 것은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신설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의 근로자 고용 증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고용창출투자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특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표 4>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특례조항 신설법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u>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u>뺀</u>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p>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u>뺀</u>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p>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u>개인지방소득세</u>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4.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특례조항 신설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서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을 하여 2024년도 감면액이 1,32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²⁶⁾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한 법인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 본사·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지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을 하여 2024년도 감면액이 75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²⁷⁾

그러한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및 공장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 및 공장을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수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장점도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례조항 신설의 대상으로 우수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특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2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3, 94면.

27)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보고서, 94면.

<표 5>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조항 신설법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u>공장시설</u>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u>공장</u>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u>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p>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u>본점이나 주사무소 및 그 공장시설</u>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u>사업</u>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u>본점이나 주사무소 및 공장</u>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u>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p>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법 안
<p>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u>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u>개인지방소득세</u>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u>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장</u>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u>개인지방소득세</u>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u>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점이나 주사무소 및 공장</u>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본점이나 주사무소 및 공장</u>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u>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V. 결론 및 시사점

「지방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만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1679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인력·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지방소득세로서 발생되고 있는 그 불합리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입법취지와 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입법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특례규정 신설,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례조항 신설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의 3가지 특례조항(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2014년부터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와 같이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과세권 확보는 물론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 TISIS, 2024.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2022.

_____,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3.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세종 : 기획재정부,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2021.

2. 자 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
— Focusing on Tax Credits and Reductions —**

Cho, Chang Jun* & Suh, Jung Hwa**

The Local Tax Law was passed in 2014. 1. 1. As amended by Law No. 12153,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of a domestic corporation was set as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rticle 103(19) of the old Local Tax Law.

By the way, Article 103(19) of the old Local Tax Law was amended in 2019. 12. 31. As amended by Law No. 16855, it stipulated that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and mandated that matters concerning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for individual and corporate local income tax be determin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Law(RSLTL).

However, the current RSLTL, which was enacted since 2019, only stipulates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the articles related to tax credits, tax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appli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Special Law on Tax Reduction, are not be established by law. As a result, It has led to problems with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rec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taxpayers objections to whethe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n recognize the tax credits, tax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recognized in the Corporate Tax Law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etc. and the courts have made different rulings (Seoul High Court 2020. 9. 11. Sentence 2019 No. 67823 Judgment, Daejeon High Court 2020. 5. 27. Sentence 2019 No.1679

* Primary Author : Adviser at Hyunbin Tax Corporation, PH.D. in Taxation

**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at Hyupsung Univ.

Judgment, Suwon High Court 2020. 6. 10. Judgment No. 2019 No.13158) has caused confusion for taxpayers as well as legal stability issues.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tax credits and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appli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SLTL. And then set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gulations and items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and RSLTL. And I provide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the special provision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income tax system, tax principles, and reasonable selection criteria for items.

▶ **Key Words** : corporate local income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law,
article 103(22) of the local tax law,
special system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rryover taxation